

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호외 2022. 6. 13.(월)

www.jeonbuk.go.kr

|   | 공     | 1 | 고    |            |        |  |
|---|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|
| _ | 3 333 |   | 2000 | <br>2004 2 | <br>01 |  |

발행 전 라 북 도 (편집 공보관실 ☎(063)280-2186) (54968)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공고 제2022-1051호

## 제391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91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.

> 전라북도지사 2022년 6월 13일

| 연번 | 조 례 안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부서<br>(담당자)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라북도<br>정보화총괄과<br>김대영(063-280-2596) |
| 2  |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전라북도 농산유통과<br>윤종현(063-280-4625)     |
| 3 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        | 전라북도 문화예술과<br>최승순(063-280-2493)     |

※ 문의처 :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

제출년월일: 2022. 6. 제 출 자: 전라북도지사

제안설명자: 기획조정실장

##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(시행 '21.6.10.)됨에 따라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
- 나.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「국가지식 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| 제정 및 시행 ('21.12.9.)에 따른 관 련 규정 정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전자정부법」 및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상의 용어 충돌에 따른 정비
  - '지역정보화'를 '정보화'로 변경(안 제2조~제7조, 제10조~제12조, 제13조 ~제15조. 제20조)
- 나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 정비
  - '인터넷 중독'을 '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'으로 변경 (안 제4조제3항제9호, 제10조제4항제7호, 제12조의2제2호, 제21조)
  - '인터넷중독 대응센터'를 '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'로 변경(안 제 12조의2)
- 다.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확화
  - 전자정부법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(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제11호)
- 라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삭제된 규정 반영(안 제4조제4항)
  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전부개정 시 부문계획(구.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 조제2항)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
- 마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및 「저작권법」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 삭제(안 제5조제2항, 제17조)
- 바. 영문 표기를 한글 용어로 정비(안 제7조, 제12조의2)
- 사. 「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 항 반영
  - '지식정보자원'을 '국가지식정보'로 용어 변경(안 제16조제1항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. 「전자정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협의: 감사관, 여성청소년과, 법무행정과

라. 입법예고 : 2022. 5. 6. ~ 5. 26.(20일간)

4.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전라북도 조례 제 호

####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"을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및 「전자정부법」"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"정보화"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를 따른다.

제3조의 제목 "(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)"을 "(정보화의 기본원칙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"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"를 "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"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"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"을 "(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, "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"을 "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본계획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한다.

제4조제2항(종전의 제3항)제1호 및 제2호 중 "지역정보화"를 각각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인터넷 중독"을 "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2호(종전의 제11호)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11.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"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"을 "(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.

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"지역정보화"를 각각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정보화 기본계획"을 "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7조제4호 중 "정보통신기술(Information & Communication Technology)"을 "정보통신기술"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정보화 시책"을 "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"으로,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7호 중 "인터넷중독"을 "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"으로 한다.

제11조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"지역정보화의 추진"을 "정보화의 추진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행정·주민생활·산업·복지·교육·문화 그 밖에"를 "행정·주민생활·산업·복지·교육·문화 및 그 밖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지역정보화"를 각각 "정보화"로 한다.

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범위 내"를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인터넷중독"을 "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"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ICT관련"을 "정보통신기술 관련"으로 한다.

가. 전북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(스마트 쉼센터) 운영 및 사업 제13조제1항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한다.

제14조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"(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)"을 "(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식정보자원을"을 "국가지식정보를"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 중 "지역정보화"를 "정보화"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"(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)"를 "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인터넷중독"을 "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30조의6"을 "법 제52조"로, "인터넷중독의"를 "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"로, "인터넷중독대응센터"를 "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법 제30조의8"을 "법 제54조"로, "인터넷중독"을 "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"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"법 제35조"를 "법 제50조"로, "범위내"를 "범위"로 한다. 제25조 중 "관하여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</u> 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제1조(목적) <u>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및 「전</u> <u>자정부법」</u> 제2조(정의) |
| 1.・2. (생 략)   | 1.·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"지역정보화"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·주민생활·산업·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·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.              | 3. "정보화"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<br>한다) 제2조제2호를 따른다.   |
| 4. (생 략)  | 4. (현행과 같음)  |
| 제3조(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) 전라북도지사(이하"도<br>지사"라 한다)는 <u>지역정보화</u> 를 추진할 때 다음 각<br>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   | 제3조(정보화의 기본원칙) <u>정보화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5. (생 략)  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 | 제2장 <u>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지역<br>정보화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<br>년마다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<br>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| 제4조(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정보<br>화 <u> </u>                 |
|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고, 시<br>·군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.  | <삭 제>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③ 기본계획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의 지능<br>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한다.      |
|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<br>한다.   | ②<br>  |
| 1. <u>지역정보화</u> 시책의 기본방향  | 1. 정보화   |
| 2. <u>지역정보화</u> 의 목표와 전략  | 2. 정보화   |

도

| 3. ~ 8. (생 략)  | 3. ~ 8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
| 9. 정보격차 해소, <u>인터넷 중독</u> 예방·해소  | 9 <u>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(생 략)  | 10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| 11.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<br>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|
| <u>11</u> . 그 밖에 <u>지역정보화</u>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| <u>12</u> <u>정보화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 | <삭 제>   |
| 제5조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 략)   | 제5조 <u>(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u>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<br>해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<br>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<br>행계획을 포함한다.      |
| ③ (생 략)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6조(정보화위원회) ①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 추진과<br>관련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전라북도 정보화<br>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            | 제6조(정보화위원회) ① <u>정보화</u>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 략)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<br>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<br>다.  | ③   |
| 1. · 2. (생 략)  | 1.・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<u>지역정보화</u>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<br>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 | 3. <u>정보화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정보화 기본계획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   | ④ 기본계획  |
| ⑤ ~ ⑧ (생 략)  | ⑤ ~ ⑧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| 제7조(위원회의 기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자문한다.  |   |
|--|---|
| 1. ~ 3. (생 략)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|
| 4. <u>정보통신기술(Information &amp; Communication Te</u><br><u>chnology)</u> 발전 관련 정책개발   | 4. <u>정보통신기술</u>  |
| 5. ~ 8. (생 략)  | 5. ~ 8. (현행과 같음)  |
| 9. 그 밖에 <u>지역정보화</u> 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<br>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| 9 <u>정보화</u>  |
| 제10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<u>지역정보화</u>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"정보화책임관"이라 한다)을 둔다.  | 제10조(정보화책임관) ① <u>법 제8조에 따라</u><br>지능정보화 시책 <u>정</u> 보화 |
| ②・③ (생 략) 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 |
|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   | <b>4</b>  |
| 1. ~ 6. (생 략) 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 |
| 7. 정보격차의 해소, <u>인터넷중독</u> 예방과 해소   | 7 <u>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・9. (생 략)  | 8.・9. (현행과 같음)  |
| 제11조(정보화책임관 협의회)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 의<br>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·<br>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<br>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·협의하<br>기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둔다. | 제11조(정보화책임관 협의회) <u>정보화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 | 제3장 <u>정보화의 추진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2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·주민생활·산업·복지·교육·문화 그 밖 에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   | 제12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<u>행정</u> -주민생활·산업·복지·교육·문화 및 그 밖의  |
| ②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 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와<br>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<br>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<br>화하여야 한다.  | ② 정보화   |
| ③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<br>영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 | ③ <u>정보화</u>  |

도

| 제12조의2(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) 도지사는 다음<br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<br>또는 단체에 예산의 <u>범위 내</u> 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<br>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| 제12조의2(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)<br><u>범위</u><br>1. (현행과 같음) |
|---|---|
| 2. <u>인터넷중독</u> 예방사업  | 2. <u>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가.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사업비와 운영비 지</u><br>원   | 가. 전북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(스마트<br><u>쉼센터) 운영 및 사업</u>   |
| 나. (생 략)  | 나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(생 략)  |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<u>ICT관련</u> 인력양성과 홍보사업  | 4. <u>정보통신기술 관련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3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도지사는 <u>지역정보</u><br>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, 관련<br>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·<br>재정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          | 제13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<u>정보화</u>                    |
|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<u>지역정보화</u> 추진을 위하여 <u>지역정보화</u> 와 관련된 기관·단체와 외국의 기관·단체·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<u>정보화</u><br><u>정보화</u>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4조(공공기관 등과의 협력) 도지사는 <u>지역정보화</u><br>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내 공공기관과<br>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4조(공공기관 등과의 협력) <u>정보화</u>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5조(정보통신망의 구축・운영 등) ① (생 략)  | 제15조(정보통신망의 구축・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|
| 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<br>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<br>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 | ②   |
| 제16조(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) ① 도지사는 각종 <u>지</u><br><u>식정보자원을</u>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도민들이 접<br>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<br>제공할 수 있다.              | 제16조(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등) ① <u>국가</u><br>지식정보를           |
| ②·③ (생 략)  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7조(저작권 등록) 도지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<br>한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과 각종 콘텐츠 등에 대<br>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|

| <u>한다.</u>   |   |
|--|---|
| 제20조(정보문화의 창달) 도지사는 도민이 <u>지역정보화</u> 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<br>확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 | 제20조(정보문화의 창달) <u>정보화</u>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1조 <u>(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)</u>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하여 <u>인터넷중독</u> 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1조 <u>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)</u> ①<br><u>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</u> |
| ② 도지사는 <u>법 제30조의6</u> 에 따라 <u>인터넷중독의</u> 예<br>방과 해소를 위하여 <u>인터넷중독대응센터</u> 를 설치·<br>운영할 수 있다.  | ② <u>법 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</u><br>과의존의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센터              |
| ③ 도지사는 <u>법 제30조의8</u> 에 따라 <u>인터넷중독</u> 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교육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<u>법 제54조</u> <u>지능정보서비스</u><br><u>과의존</u><br>          |
| 제22조(정보격차의 해소) ① ~ ③ (생 략)   | 제22조(정보격차의 해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도지사는 <u>법 제35조</u> 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<u>범위내</u> 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| ④ <u>법 제50조</u>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| 제25조(시행규칙) <u>필요한</u>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관계 법령

#### □ 지능정보화 기본법

- 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정보격차해소교육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1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
- 제52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용센터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(이하 "대응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
- 2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 · 홍보
- 3.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4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# □ 전자정부 기본법

제5조의2(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·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관별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「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제1호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)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·전라북도의회 위원회·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-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2. 미첨부 사유

○ 「전라북도 정보화 조례안」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 선언적 조례안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#### 3. 작성자

○ 정보화총괄과 지방전산주사 김대영(063-280-2596)

##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의 안 번 호

제출년월일: 2022. 6.

제 출 자: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: 농축산식품국장

#### 1. 제안이유

가. 법률 제명 변경('15년), 삼락농정위원회 출범('15년),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('17년)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법률 제명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변경(안 제2조)
- 나. 혁신위원회의 실무 논의 강화 등을 위해 당연직 위원 변경(안 제4조)
- 다. 정기회 개최 시기를 매년 8월에서 매년 1회로 변경(안 제7조)
- 라.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종합계획(5년 주기)과 연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(안 제13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협 의: 감사관, 예산과, 법무행정과, 여성청소년과

라. 입법예고 : 2022. 5. 6. ~ 2022. 5. 26.

4.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: 붙임

전라북도 조례 제 호

##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"농산물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다.
- 4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다.
- 5. "생산자 단체"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다.

제3조 중 "도지사"를 "전라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"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부지사와 농축산식품국장"을 "농축산식품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행정부지사가"를 "농축산식품국장이"로 한다. 제7조제2항 중 "8월에"를 "1회"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전라북도)"를 "(종합계획 수립·시행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<br>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  | 제2조(용어의 정의)   |
| 1.・2. (생 략)  | 1.・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"농산물"이란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<br>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다.  | 3. "농산물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br>시행령」 제5조제1항에 따른다.   |
| 4. "농업인"이란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<br>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다.  | 4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br>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다.   |
| 5. "생산자 단체"란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<br>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·제2호·제5호에<br>따른다.  | 5. "생산자 단체"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<br>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다.   |
| 6. (생 략)   | 6. (헌행과 같음)   |
| 제3조(위원회의 설치) <u>도지사</u> 는 "통합 마케팅 전문 조<br>직"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<br>하여 "전라북도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(이하 "위<br>원회"라 한다)"를 둔다. | 제3조(위원회의 설치) <u>전라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</u><br><u>다)</u> |
|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   |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<u>행정부지사와 농축산식품국장</u><br>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<br>장이 임명한다.                    | ② <u>농축산식품국장</u><br><u>농축산식품국장</u>                  |
| 1. ~ 6. (생 략) 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가</u>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<br>에서 호선한다.  | ③ <u>농축산식품국장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・⑤ (생 략)  | ④·⑤ (현행과 같음)  |
| 제7조(회의) ① (생 략)  | 제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정기회는 매년 <u>8월에</u>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<br>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  | ② <u>1</u> 對  |
| ③ (생 략)  | ③ (현행과 같음)  |
| 제13조(전라북도) 도지사는 "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"<br>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<u>3년</u> 단위로<br>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3조 <u>(종합계획 수립·시행)</u> <u>5년</u>                  |

#### 관계 법령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(부칙 제13383호, 2015.6.22.)

####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"을 "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"으로 한다.

## 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약칭 :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)

- 제3조(농업인의 기준)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 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 사람
  - 2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
  - 3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  - 4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 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사람
  - 5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 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- 제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 법 제3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.
  - 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  - 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  - 3.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
  - 4. 삭제
  - 5.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·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 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
- 제5조(농수산물의 범위)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제 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「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제1호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)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·전라북도의회 위원회·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-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2. 미첨부 사유

○ 법률의 제명 변경, 당연직 위원 변경,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,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 등 일부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#### 3. 작성자

○ 농산유통과 지방농업주사 윤종현(063-280-4625)

####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

제출년월일: 2022. 6.

제 출 자:전라북도지사

제안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

#### 1. 개정이유

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기본장르 규정에 복합장르 사용료 규정 추가 및 운영 시간을 현행화하고, 신규 장비 취득과 최저 시급 인상 등으로 변경되 는 부대설비 사용료 및 인력지원비에 대한 부과 근거 등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세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시설 사용료 장르 규정 개선과 운영시간 현행화(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1)
- 나, 부대설비 사용료 및 인력지원비 납부 근거 현행화(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1)
- 다. 사용 취소 환불 기준 명확화(안 제5조제3항제1호~제4호)
- 라. 위탁 기간(재계약) 연장 제한(안 제7조제3항)
- 마. 오타 수정 및 용어 정리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제3호, 제4호, 제4조, 제5조제3항제1호, 제6조, 제7조, 제8조제1항, 제10조제1항,제2항, 제4항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제1항,2항, 제17조)
- 바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
- 사, 띄어쓰기로 인한 제명 변경

#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연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

「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부서협의 : 감사관, 법무행정과, 여성청소년과, 예산과, 세정과

라. 타 시도 공연장 사용료 기준 근거 현황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5. 10. ~ 5. 30.(20일)

2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#### 4.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전라북도 조례 제 호

####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"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"를 "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한국소리문화의전당(이하 "문화전당"이라 한다)"을 "한국소리문화의전당"으로, "관하여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문화전당"을 "한국소리문화의전당(이하 "전당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"공연"을 "공연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국내외"를 "국내·외"로 한다.

제4조 중 "특별한"을 "특별히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"(사용료 납부등)"을 "(사용료 납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주관·주최"를 "주최·주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각호 외의 부분 중 "반환"을 "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환"으로 하며,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 중 "때: 전액"을 각각 "때: 전액 반환"으로 하고, 같은항제3호 중 "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"를 "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가"로, "때: 전액"을 "때: 전액 반환"으로 하며, 같은항 제4호 중 "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이전에"를 "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사용자가"로, "때: 위약금"을 "때: 전액의"로, "잔액"을 "잔액 반환"으로 한다.

제6조 단서 중 "그러하지 아니하다"를 "그렇지 않다"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및"을 "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"를 "위탁 기간 및 연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1조를 따른다"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한다."를 "한다"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"회계연도개시"를 "회계연도 개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아니되며"를 "안 되며"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"문화전당원"을 "전당"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범위내"를 "범위"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 제목 외의 부분, 제5조제3항제1호,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, 제7조제1항, 제7조제2항, 제7조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, 제12조제1항, 제12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문화전당"을 각각 "전당"으로 한다. 제12조 제4항의 "문화전당원"을 "전당"으로 한다.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사용 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【별표 1】

##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료기준 (제5조 관련)

## 1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 :원/부가가치세 별도)

|       |   |   | 사용료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시설명   | 기준  | 객식 악 구 용<br>클 국 연 무   | 뮤지컬<br>오페라<br>복합장르 | 행 사<br>대중음악 | 비 고  |
|       | 오전  | 200,000   | 400,000            | 700,000     | 1. 토요일 오후, 일요일, 공휴일은 기준  |
| 모악당   | 오후  | 250,000   | 450,000            | 750,000     | 사용료의 30%를 가산함.<br>2. 리허설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  |
|       | 야간  | 300,000   | 500,000            | 800,000     |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.<br>3. 익일의 공연(행사)준비를 위해 22:00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오전  | 70,000  | 170,000            | 350,000     |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%를 가산함.<br>(1, 2항 미적용)   |
| 연지홀   | 오후  | 100,000   | 190,000            | 420,000     | 4. 공연(행사)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<br>경우에는 기준사용료의 30%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야간  | 120,000   | 220,000            | 450,000     | <ul><li>5.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</li><li>6. 1회라 함은 오전오후,야간, 철야중의 하나를 말함.</li></ul> |
|       | 오전  | 50,000  | 100,000            | 150,000     | - 오전 09:00 ~ 12:00<br>- 오후 13:00 ~ 17:00   |
| 명인홀   | 오후  | 70,000  | 120,000            | 170,000     | - 야간 18:00 ~ 22:00<br>- 철야 22:00 ~ 02:00   |
|       | 야간  | 90,000  | 150,000            | 200,000     | ※ 새벽2시 이후의 대관은 승인하지 않음   |
| 국제회의장 | 1회  |   | 200,000            | 00,000      |  |
| 야외공연장 | 1회  |   | 500,000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전 시 실 | 1일,<br>평당 경 200원 - 야간: 19:00 ~ 2<br>내.난방 800원 - 냉방: 6월 ~ 8월 | - 1일: 09:00 ~ 19:00<br>- 야간: 19:00 ~ 24:00 (1일 사용료 추가)<br>- 냉방: 6월 ~ 8월 의무적 가동<br>- 난방: 12월 ~ 2월 의무적 가동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
|       | 음향  |   | 30,000원            |             | -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 |

## 2. 부대설비 사용료

(단위 :원/부가가치세 별도)

| 구 분<br>시설명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준     | 사용료     | 비 고 *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(1일 1작품)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.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           | 그랜드대형(외산)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공연     | 80,000  | -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피아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그랜드대형(국산)              | 1공연     | 60,000  | -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며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업 라 이 트                | 1공연     | 20,000  |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모 악 당                  | 1시간     | 40,000  |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연 지 홀                  | 1시간     | 30,000  |   |
|            | Б                     | 병인홀(국제회의장)             | 1시간    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| <sup>은</sup> 광기(외부기기용) | 1일      | 500,000 |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무빙콘솔                   | 1공연     | 200,000 |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무빙라이트                  | 1대/1공연  | 50,000  |   |
| 조명시설[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LED PAR                | 1대/1공연  | 10,000  | -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LED 무빙                 | 1대/1공연 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| LED 스트로브 무빙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대/1공연 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| PAR 64, 서스포줌,SL라이트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0대/1공연 | 20,000  |   |
| Ī          | PAR 46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대/1공연  | 5,000   |   |
| 피아노<br>    | 포그머신액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L      | 10,000  |   |
|            | 녹음(CD,MD,DAT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공연     | 30,000  |   |
|            | 녹음(카세트테이프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공연     | 10,000  |   |
|            | 무선마이크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| 유선마이크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10,000  |   |
|            | 단순재생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30,000  |   |
|            | 음향콘                   | 메인콘솔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500,000 | 노이하이 및 고역자 기기 가이트 본이 점이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솔                     | 확성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50,000  | - 녹음외의 본 공연시 기기 사용도 동일 적용<br>- 녹음시 공테이프 사용자 준비  |
| 음향시설       | 모니터스피커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30,000  | - 마이크로폰에 사용되는 건전지 사용자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외부출력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30,000  | (리허설 포함)  |
|            | 프로젝터-자막기<br>(모악당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150,000 |   |
|            | 프로젝트-자막기<br>(연지홀,명인홀)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100,000 |   |
|            | 무선인터컴(5채널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100,000 |   |
|            | 유선인터컴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10,000  |   |
| 영사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연중 사용                 | 1회      | 30,000  |   |
| (35m/m)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영화만 사용                 | 1회      | 100,000 |   |

보

(단위 :원/부가가치세 별도)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      |         | (단위 :전/누/[/]시세 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|
| 구 분<br>시 설 명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기 준    | 사용료     | 비 고 *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(1일 1작품)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.   |
|              | 드라이이           | ·이스기        | 1대/1공연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스모그기<br>화니프로젝터 |             | 1대/1공연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대/1공연 | 50,000  |   |
| 효과장비         | 핀스포트라          | 이트(1kw)     | 1대/1공연 | 20,000  | - 1대 사용은 1회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블랙리            | -이트         | 1대/1공연 | 10,000  | 재료 준비는 사용자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스트             | 로브          | 1대/1공연 | 1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핀스포트라          | 이트(3kw)     | 1대/1공연 | 30,000  |   |
| 동시 _         | 동시통'           | 역시설         | 1식     | 200,000 | - 수신기 1대당 500원씩을 별도 징수<br>- 1일 2회 이상 사용시는 1회 초과분에 |
| 통역<br>시설 -   | 회의용1           | 라이크         | 1기/1회  | 20,000  | 대하여 50%를 할인함.<br>- (사전 승인없이 초과 사용시는 기본시설의         |
| 1.6          | 수신기(           | 200조)       | 1회     | 100,000 | 초과 사용료 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음향반사판          | 고정식         | 1공연    | 3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이동식         | 1공연    | 100,000 |   |
|              | 오케스트라피트        |             | 1회     | 3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회전무대           |             | 1공연    | 100,000 |   |
|              | 승강-            | 무대          | 1회     | 3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수평이-           | 수평이동무대      |       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변형무대(계단,경사)    |             | 1회     | 5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덧 마 루          |             | 1일     | 100,000 |   |
|              | 보면대/           | 접의자         | 1조/1일  | 2,000   | - 덧마루와 무용장판은 1일 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무대시설         |                | 모악당         | 1일     | 150,000 |   |
| 1 -11 -1 -   | 무용장판           | 연지홀         | 1일     | 100,000 | 셋팅/철거를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명인홀         | 1일     | 5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합창 리           | <b>나이</b> 저 | 1일     | 100,000 |   |
|              | 덧마루·           | 덧마루-1,2단    |        | 100,000 |   |
|              | 덧마루            | 3단          | 1일     | 150,000 |   |
|              | 덧마루            | 4단          | 1일     | 200,000 |   |
|              | 샤              | 라           | 1공연   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대 분            | 장실          | 1일     | 3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세트바틴           | 민(10조)      | 1공연    | 20,000  |   |
|              | 리어,프론!         | <br>트 스크린   | 1공연    | 20,000  |   |

보

(단위 :원/부가가치세 별도)

| 시 설 명  | 구 분           | 기 준 | 사용료     | 비 고 *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(1일 1작품)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.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|
|        | 모 악 당         | 1시간 | 100,000 |   |
|        | 연 지 홀         | 1시간 | 70,000  |   |
|        | 명인홀(국제회의장)    | 1시간 | 50,000  | -<br>냉방 : 6월~8월은 의무적 가동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냉·난방   | 연습실           | 1회  | 20,000  | 영청 · 0월 0월은 되구적 가능<br>난방 : 12월~2월은 의무적 가동       |
| 9.T.9  | 세미나실          | 1회  | 20,000  | -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귀빈실           | 1회  | 20,000  | - 기단 법단의 사용의 결정<br>-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연회장           | 1회  | 20,000  |   |
|        | 중회의장          | 1회  | 20,000  |   |
|        | 15,000Ansi    | 1일  | 500,000 |   |
| 빔프로    | 10,000Ansi    | 1일  | 400,000 |   |
| 젝터     | 7,000Ansi     | 1일  | 200,000 |   |
|        | 국제회의장         | 1일  | 40,000  |   |
| 여스시    | 대 연습실(50평 이상) | 1일  | 50,000  |   |
| 연습실    | 소 연습실(50평 이상) | 1일  | 30,000  |   |
| .T-əll | 중회의장          | 1일  | 100,000 |   |
| 국제     | 프레스센터         | 1일  | 50,000  |   |
| 회의장    | 세미나실          | 1일  | 50,000  |   |
|        | 연회장 사용료       | 1회  | 120,000 |   |
|        | 귀 빈 실         | 1일  | 50,000  |   |
|        | 분 장 실         | 1일  | 10,000  |   |
|        | 중 계 료         | 1공연 | 200,000 |   |

## 3. 기본 기술스탭

(단위 : 명)

| 구 분 | 공연장별 | 계 | 무대감독 | 무대진행 | 조명 | 음향 | 기계 | 비고 |
|-----|------|---|-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
|     | 모악당  | 5 | 1    | 1    | 1  | 1  | 1  |    |
| 공 연 | 연지홀  | 5 | 1    | 1    | 1  | 1  | 1  |    |
|     | 명인홀  | 4 | 1    | -    | 1  | 1  | 1  |    |
| 설치  | 모악당  | 5 | 1    | 1    | 1  | 1  | 1  |    |
|     | 연지홀  | 5 | 1    | 1    | 1  | 1  | 1  |    |
|     | 명인홀  | 4 | 1    | _    | 1  | 1  | 1  |    |

## 4. 인력 지원비

(단위 : 원)

| 구 분  | 인 력   | 사 용 료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|---------|--|
| 효과기기 운용 - 핀 스포트라이트 - 파니프로젝터 - 드라이아이스 - 모그머시인 | 1인/일당 | 100,000 | - 기본 : 09시~18시(8시간)<br>- 야간근무 : 18시 이후 |
| 무대 지원  |       | 100,000 | (50,000원 추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명 지원  |       | 100,000 |  |
| 음향 지원  |       | 100,000 |  |

## 【별표 2】 〈삭제 2016. 12. 30〉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 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(이하 "문화전당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  |
| 제2조(위치) <u>문화전당</u> 은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에<br>둔다.  | 제2조(위치) <u>한국소리문화의전당(이하 "전당"이라 한</u><br><u>다)</u> |
| 제3조(업무) <u>문화전당</u>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<br>다.   | 제3조(업무) <u>전당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・2. (생 략)   | 1.・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전통문화예술의 발표 및 <u>공연</u>   | 3 <u>공연 지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문화예술의 <u>국내외</u> 교류사업  | 4 <u>국내·외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5. · 6. (생 략)  | 5.・6. (현행과 같음)  |
|--|---|
| 제4조(시설물 등 사용) <u>문화전당</u> 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전라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<u>특별한</u>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    | 제4조(시설물 등 사용) <u>전당</u><br><u>특별히</u>                   |
| 제5조 <u>(사용료 납부등)</u> ①(생 략)  | 제5조 <u>(사용료 납부 등)</u>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국가 또는 전라북도가 <u>주</u><br>관·주최하는 행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<br>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<br>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, 사용료 감면 대상<br>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 | ②   |
| ③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br>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<u>반환</u> 하여야 한다.   | ③ <u>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</u><br>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<u>문화전당</u> 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<br>된 <u>때 : 전액</u>   | 1. 전당<br>때: 전액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<br>지된 <u>때 : 전액</u>   | 2<br>때: 전액 반환   |
| 3. <u>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</u>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<u>때 : 전액</u>  | 3. <u>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가</u><br>때: 전액 반환               |
| 4. <u>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이전에</u>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<u>때 : 위약금</u> 10분의 1을 공제한 <u>잔액</u>   | 4. <u>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사용자가</u><br><u>잔액 반환</u>   |
| 제6조(권리의 양도금지 등) <u>문화전당</u> 의 사용허가를<br>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<br>지 못한다. 다만,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<br>그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조(권리의 양도금지 등) <u>전당</u><br><u>그</u><br><u>렇지 않다</u> . |
| 제7조(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<u>문화전당</u>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(운영의 위탁) ① <u>전당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<u>문화전당</u> 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<u>및</u>  | ② 전당 또는   |

도

| 단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수탁<br>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.  ③ <u>문화전당</u> 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<br>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며, <u>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</u> 수 있다.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) ①제7조제3항에 따라<br>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, 도지사는 공정<br>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90<br>일전까지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<br>원회"라 한다.)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하여<br>야 한다. 다만,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<br>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.〈신<br>설 2005. 11. 4, 개정 2016. 12. 30〉 | 제8조(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) ①          |
| ② (생 략)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|
| 제10조(운영지원)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<br><u>화전당</u>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<br>원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라북도 공<br>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 | 제10조(운영지원) ① <u>전</u><br>당  |
| ②수탁자는 전라북도 <u>회계연도개시</u> 70일 전까지 연간예산 요구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br>단,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  | ② <u>회계연도 개시</u><br>        |
| ③ (생 략) 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|
| ④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<u>아니되며</u> , 「지방재정법」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   | ④ 안 되며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(생 략)   |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|
| 제11조(수입금 등의 처리)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<br>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게 할<br>수 있으며, 수탁자는 도비지원금 등 수입금을 문<br>화전당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   | 제11조(수입금 등의 처리) <u></u> 전당- |

도

| 제12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<br>휘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, 문화전당 운영 | 제12조(수탁자의 의무) ①전당전전당                   |
|---|--|
| 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  |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|
|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편람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문화전당의 시설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전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해야 한다.   |  |
| ③ 수탁자가 문화전당 내의 시설을 신축 또는 중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  ③전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·변경할 때에는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, 문화전당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당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물과 재산은 제3자에의 담보설정, 양도, 매매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전 중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물과 재산는 제3사에의 담모설정, 장도, 매매 롯<br>교환을 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|  |
| 교원들 될 구 畝다.   |  |
| ④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없이 문화전당원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을 때에는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「민법」 등에 따른다.  |  |
|   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5조(수익사업)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5조(수익사업)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활하게 수행하고 <u>문화전당</u>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 | <u>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수익사업의 범위는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) 범위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내에서 구체적 사업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u>데</u> 에서 1 세탁 사람에당을 비탁으로 정원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(생 략) 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7조(자체운영규정) 수탁자는 문화전당 운영에 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  제17조(자체운영규정) 전당                  |
| 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있다.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을 받아야 한다.   |  |
| •   |  |

####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「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제1호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)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·전라북도의회 위원회·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-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 야 한다.

### 2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#### 3. 작성자

○ 문화예술과 정보화총괄과 지방사서주사 최승순(063-280-2493)

관계 법령

#### □ 공연법

제8조(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#### 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 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 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

문화시설의 상세 분류(제2조제2항 관련)

- 1. 공연시설
  - 가. 공연장: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(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)
    - 1) 종합공연장: 시·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
    - 2) 일반공연장: 시·군·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
    - 3) 소공연장: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

#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 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이 조에서 "총 사용가능기간"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

갱신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 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 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 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#### □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7조의2(위탁기간 및 재계약) 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 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」, 「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 다. <개정 2013. 5. 10>

- ②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필요 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10>
-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,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5.29.>